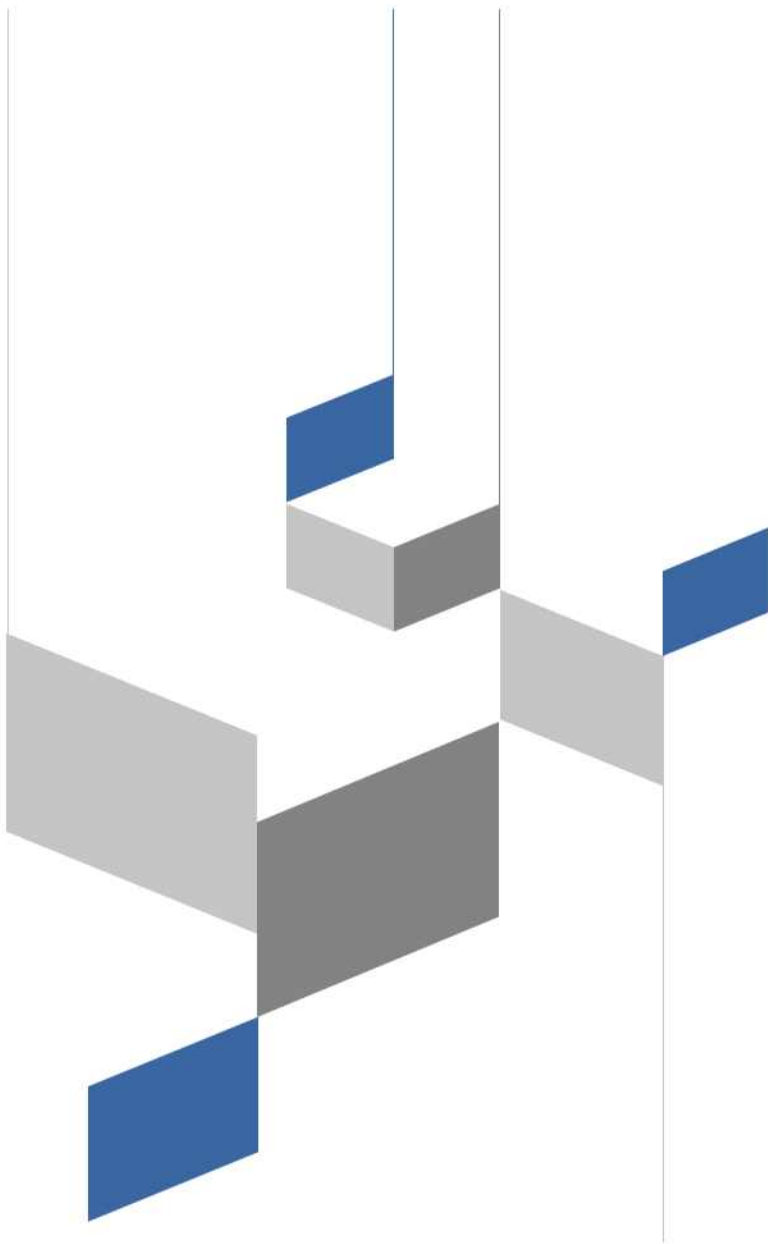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25. 01.



(사) 벤처기업협회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목차

제1장 조사 배경	1
-----------	---

제2장 조사 결과	1. 벤처기업 확인제도 인식	2
	1-1) 벤처기업확인 신청 사유	2
	1-2) 벤처기업확인 효과	3
	1-3)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인지도	6
	2. 벤처기업 지원제도 필요성 및 활용성	7
	2-1) 필요성	7
	2-2) 활용성	8
	2-3) 필요성 및 활용성 비교	10
	3. 벤처기업이 확대·신설을 희망하는 제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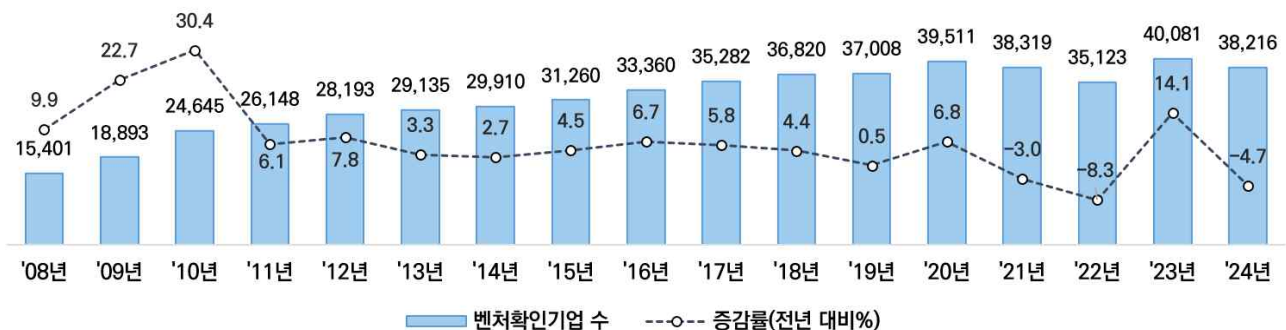
제3장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2
--------------------	----

제4장 조사 개요	15
-----------	----

(별첨) 벤처기업 우대 지원제도 요약	17
----------------------	----

-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확인 받은 벤처기업은 세제, 금융, 창업, 입지 등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 2023년 말 기준,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은 역대 최대인 40,081개 사를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소폭 감소한 38,216개 사(12월 말 기준)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벤처확인기업 수]



-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7년 시행 이후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현재의 국내외 경제 환경과 벤처생태계 변화에 발맞춰 시대적 환경 변화에 맞는 실질적인 벤처기업 지원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확인제도가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되어 벤처기업의 실제 필요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식조사’는 벤처확인기업 중 1,000개 기업(제조업 600개 사, 서비스업 400개 사)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온라인(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 본 조사에서는 벤처기업들이 지원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제도의 활용성과 필요한 지원제도는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벤처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1.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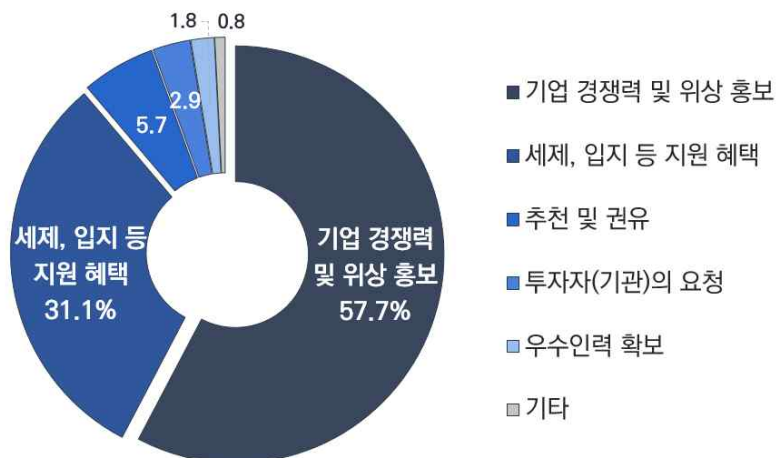
1-1. 벤처기업확인 신청사유

- 벤처기업확인 신청 사유로는 ‘기업 경쟁력 및 위상 홍보’가 57.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으며, ‘세제, 입지 등 지원 혜택’은 31.1%로 뒤를 이었다.
- 반면, ‘추천 및 권유(5.7%)’, ‘투자자(기관)의 요청(2.9%)’, ‘우수인력 확보(1.8%)’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벤처기업확인 신청 사유별 응답 현황]

(단위 : 개 사, %)

항목	응답 기업 수	비율
기업 경쟁력 및 위상 홍보	577	57.7
세제, 입지 등 지원 혜택	311	31.1
추천 및 권유	57	5.7
투자자(기관)의 요청	29	2.9
우수인력 확보	18	1.8
기타	8	0.8
합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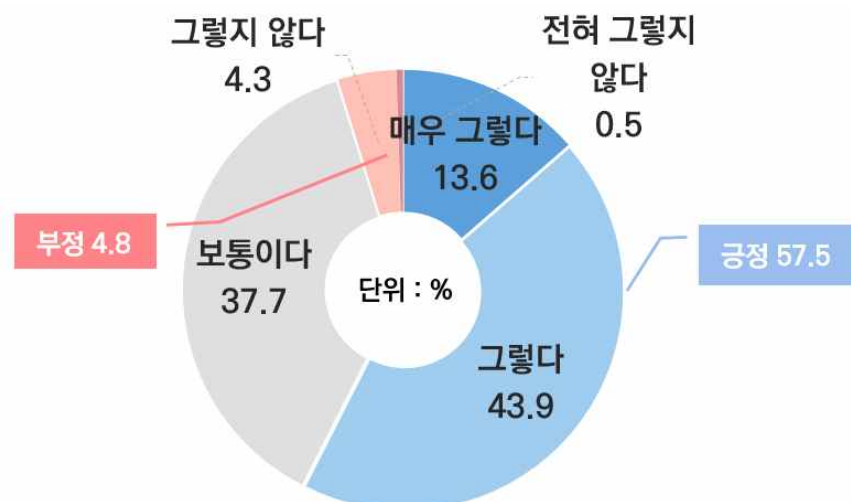
1-2. 벤처기업확인 효과

- 벤처기업확인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57.5%(매우 그렇다 13.6%, 그렇다 43.9%)로, 전체 기업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벤처기업확인의 효과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37.7%로 나타났다.
- 반면,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4.8%(그렇지 않다 4.3%, 전혀 그렇지 않다 0.5%)로 벤처기업확인 효과에 대한 부정 응답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벤처기업확인 효과 여부 응답 현황]

(단위 : 개 사, %)

항목		응답 기업 수	비율
효과있음 (57.5%)	매우 그렇다	136	13.6
	그렇다	439	43.9
-	보통이다	377	37.7
효과없음 (4.8%)	그렇지 않다	43	4.3
	전혀 그렇지 않다	5	0.5
합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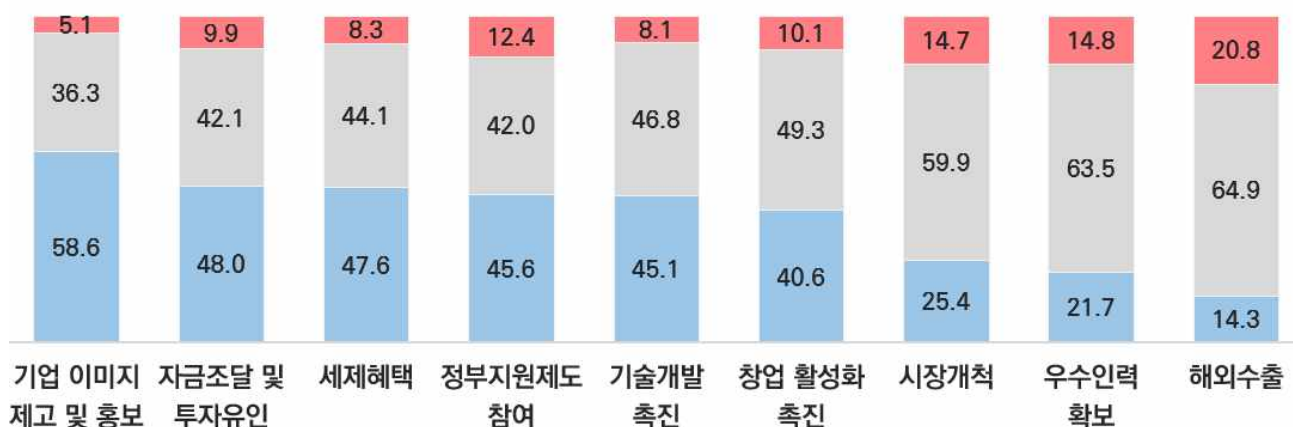
- 벤처기업확인 효과에 대한 항목별 조사 결과,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58.6%)’ 항목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부정 응답은 5.1%로 가장 낮아 기업 이미지와 홍보에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 긍정 응답이 높은 항목은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48.0%)’, ‘세제 혜택(47.6%)’, ‘정부지원제도 참여(45.6%)’, ‘기술개발 촉진(45.1%)’, ‘창업 활성화 촉진(40.6%)’으로, 모든 항목이 40% 이상의 긍정 응답률을 기록했다. (해당 항목 부정 응답 비율 : 8~12% 수준)
- 반면, ‘시장개척’, ‘우수인력 확보’, ‘해외수출’에 대한 효과는 ‘보통’ 응답 비율이 60%대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벤처기업확인에 대한 효과가 낮았다.

[항목별 벤처기업확인 효과 응답 현황]

(단위 : %)

연번	항목	응답 기업 비율			합계
		긍정	보통	부정	
1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	58.6	36.3	5.1	100.0
2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48.0	42.1	9.9	100.0
3	세제혜택	47.6	44.1	8.3	100.0
4	정부지원제도 참여	45.6	42.0	12.4	100.0
5	기술개발 촉진	45.1	46.8	8.1	100.0
6	창업 활성화 촉진	40.6	49.3	10.1	100.0
7	시장개척	25.4	59.9	14.7	100.0
8	우수인력 확보	21.7	63.5	14.8	100.0
9	해외수출	14.3	64.9	20.8	100.0

■ 긍정 ■ 보통 ■ 부정



(참고) 벤처기업확인 효과 항목별 세부응답

(단위 : %)

연번	항목	응답기업 비율(5구간)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	15.7	42.9	36.3	4.1	1.0	100.0
2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11.5	36.5	42.1	8.8	1.1	100.0
3	세제혜택	11.4	36.2	44.1	6.8	1.5	100.0
4	정부지원제도 참여	14.3	31.3	42.0	10.4	2.0	100.0
5	기술개발 촉진	10.4	34.7	46.8	7.0	1.1	100.0
6	창업 활성화 촉진	8.1	32.5	49.3	8.9	1.2	100.0
7	시장개척	6.3	19.1	59.9	12.3	2.4	100.0
8	우수인력 확보	3.9	17.8	63.5	12.8	2.0	100.0
9	해외수출	4.4	9.9	64.9	15.5	5.3	100.0

[긍정 응답비율 높은 항목 순]

(매우 그렇다+그렇다)



[부정 응답비율 높은 항목 순]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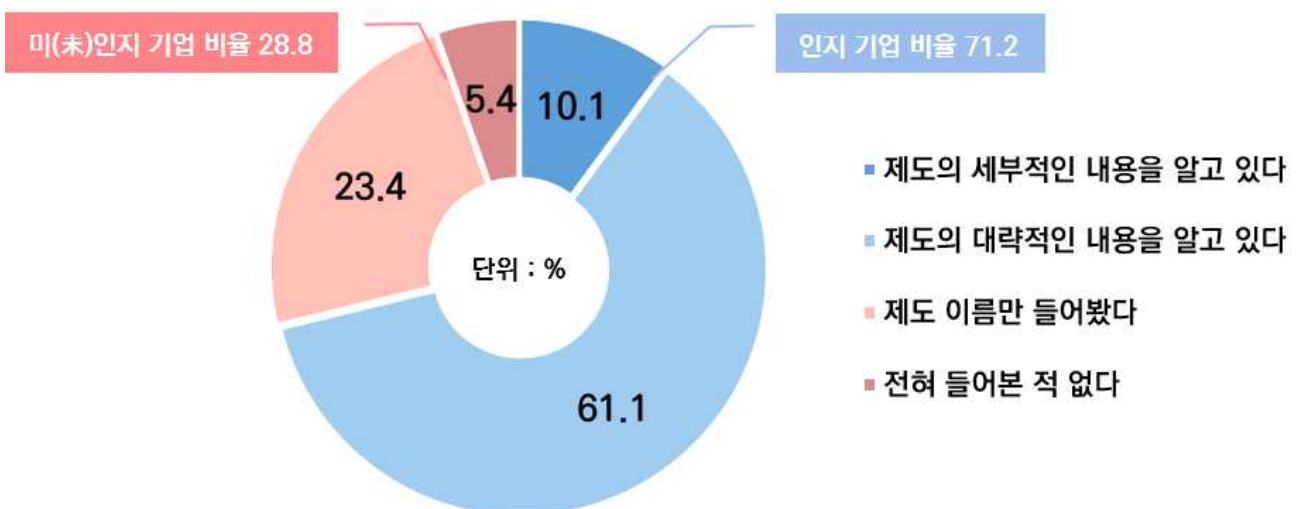
1-3.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인지도

- 전체 응답 기업의 71.2%가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10.1%는 제도의 세부 내용을, 61.1%는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 반면, 전체 응답 기업의 28.8%는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에 대해 ‘이름만 들어봤다’고 응답한 기업은 23.4%였으며,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5.4%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인지도]

(단위 : 개 사, %)

항목	응답 기업 수	비율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101	10.1
제도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611	61.1
제도 이름만 들어봤다	234	23.4
전혀 들어본 적 없다	54	5.4
합계	1,000	100.0



2. 벤처기업 지원제도 필요성 및 활용성

※ 지원제도 필요성 및 활용성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 기업의 성장단계, 투자유치 상황, 경영 상황 등에 따라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달라, 제도별 필요성과 활용성 결과 값의 차이가 클 수 있음. (예를 들어, M&A 제도는 활용 대상이 제한적이므로 다른 제도에 비해 필요 및 활용 비율이 낮을 수 있음)

2-1. 벤처기업 지원제도 필요성

[벤처기업 지원제도 필요 현황]

(단위 : %)

연번	항목	필요 여부 응답 기업 비율	
		예	아니오
1	세제	96.8	3.2
2	금융	91.6	8.4
3	연구개발	88.9	11.1
4	특허	83.2	16.8
5	입지	75.2	24.8
6	인재보상	52.8	47.2
7	광고	46.6	53.4
8	M&A	44.3	55.7

- 조사대상 기업 중에서 ‘세제’와 ‘금융’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96.8%, 91.6%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벤처기업들에게 해당 제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구개발(88.9%)’, ‘특허(83.2%)’, ‘입지(75.2%)’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인재보상’ 제도에 대해서는 52.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47.2%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해 의견이 엇갈렸다.
- ‘광고’, ‘M&A’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전체 응답 기업 1,000개 사 중 14개 기업(1.4%)만이 지원 제도 8개에 대해 전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 나머지 986개 기업(98.6%)은 이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

2-2. 벤처기업 지원제도 활용성

[벤처기업 지원제도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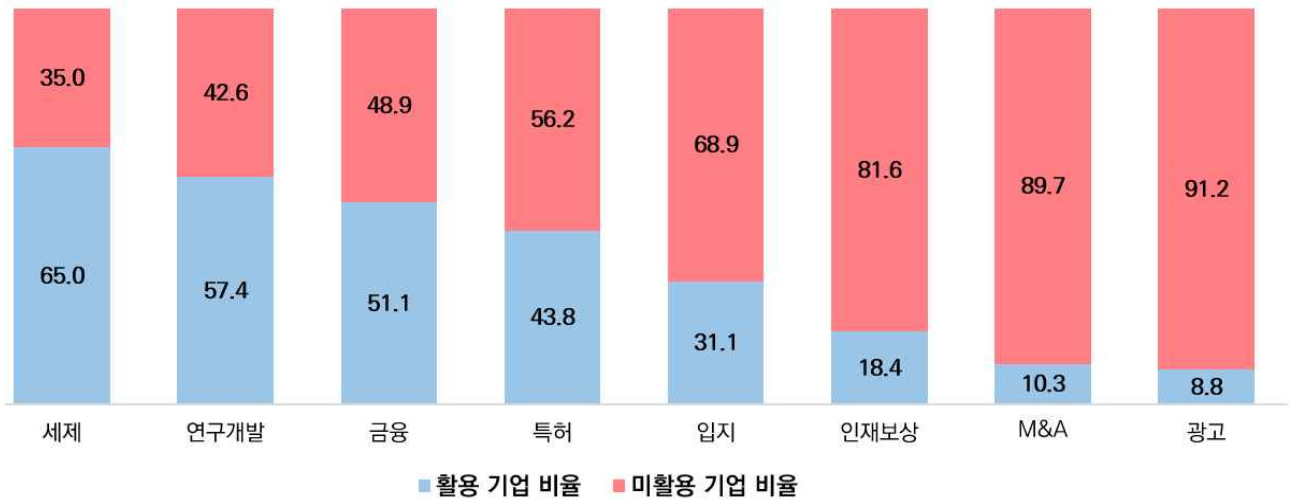
(단위 : %)

연번	항목	활용 기업 비율	미활용 기업 비율	향후 2년 이내 활용 의향*	
				있음	없음
1	세제	65.0	35.0	66.3	33.7
2	연구개발	57.4	42.6	41.3	58.7
3	금융	51.1	48.9	59.9	40.1
4	특허	43.8	56.2	48.0	52.0
5	입지	31.1	68.9	35.4	64.6
6	인재보상	18.4	81.6	21.3	78.7
7	M&A	10.3	89.7	19.2	80.8
8	광고	8.8	91.2	22.8	77.2

* '향후 2년 이내 활용 의향'은 현재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미활용기업)을 대상으로만 조사함

- 벤처기업 지원제도 중 '세제(65.0%)', '연구개발(57.4%)', '금융(51.1%)'을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50%를 상회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였다.
- 특히,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65.0%로 가장 높으며, 현재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 중 66.3%가 향후 2년 이내에 활용 의향이 있다고 밝혀 세제혜택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 제도 또한 현재 미활용 기업 중 약 60%가 향후 2년 이내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이용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반면, '특허(43.8%)', '입지(31.1%)', '인재보상(18.4%)', 'M&A(10.3%)', '광고(8.8%)'는 활용 기업보다 미활용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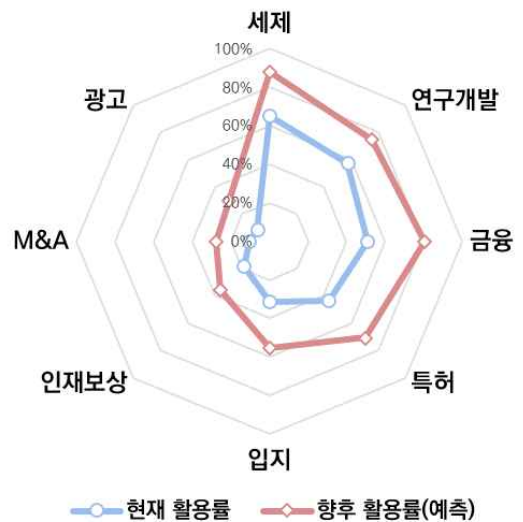
[벤처기업 지원제도 활용비율]



(참고) '향후 2년 이내 제도 활용 의향' 데이터를 이용한 활용성 예측

* 현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에도 동일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가정

- 향후 2년 이내에 '세제' 및 '금융'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기업의 비율이 약 60%대로 나타났으며, 해당 제도의 이용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세제 혜택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 상당 수 있으며, 벤처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의 확대 및 조건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3. 제도별 필요성 및 활용성 비교

- 모든 제도에서 기업의 필요 비율이 활용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 (필요비율-활용비율)는 평균 36.7%p(범위: 32~44%p)로 큰 폭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기업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률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 특히, '금융'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한 기업은 91.6%에 달하는 반면, 실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51.1%로, 40.5%p의 큰 격차를 보였다.
- '세제', '연구개발', '특허' 제도 역시 기업의 필요 비율은 높지만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30%p대의 차이를 보였다.

[벤처기업 지원제도 필요비율 및 활용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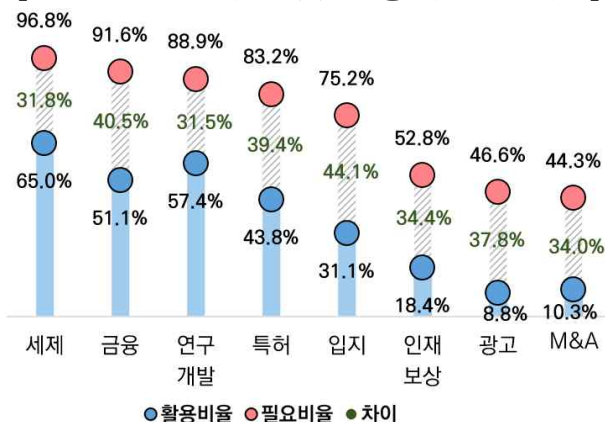
(필요비율 높은 순 / 단위 : %, %p)

구분	세제	금융	연구 개발	특허	입지	인재 보상	광고	M&A
필요비율 (A)	96.8	91.6	88.9	83.2	75.2	52.8	46.6	44.3
활용비율 (B)	65.0	51.1	57.4	43.8	31.1	18.4	8.8	10.3
차이 (A-B)	31.8	40.5	31.5	39.4	44.1	34.4	37.8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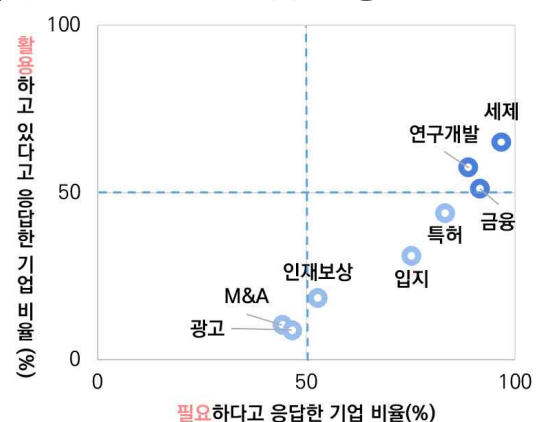
* 필요비율: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필요 응답 기업 수/전체 응답 기업 수)

활용비율: 현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활용 응답 기업 수/전체 응답 기업 수)

[제도별 필요비율 및 활용비율 그래프]



[제도별 필요비율 및 활용비율 분포도]



3.

벤처기업이 확대 · 신설을 희망하는 지원제도

(유효 응답 425개 업체 대상, 단위 : %)

구분		비율(%)	세부 의견
세제 및 금융 (63.9)	세제 감면 혜택	35.1	- 감면 기간 연장 - 세제혜택 폭 증가 - 법인세/소득세 감면
	보증 한도 증가	15.4	
	이자감면/대출 등 금융 지원	11.4	- 대출 금리 인하
	투자유치 지원	2.0	- 소액 투자 상시 모집 - 투자계약 조항 중 대기업 유리 조항 삭제
사업 (21.6)	R&D 관련 지원	10.1	- 기업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 시제품 개발에 대한 금전적 지원
	해외진출 지원	3.3	- 출입국 우대 심사 및 비즈니스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 해외 지사화 사업 시 가점 -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 수출 바우처 사업 - PL보험료 할인이나 물류비 지원
	우선심사 우대	3.1	- 정부 정책 사업 참여 가점(입찰 가산점) - 대출심사 가점
	마케팅 지원	3.1	- 전시참가 비용 및 관련 홍보비 지원 - B2B 홍보 지원
	규제/특허/인증 관련	2.0	- 특허관련비용 지원혜택 - KS 인증 제도를 강화해 중국 저가제품 난립 방지 - 공장 입주요건 완화
인력 (9.2)	고용 및 인건비 지원	7.9	- 우수 인턴 채용 지원 - 고용인원의 4대 보험 감경 - 지방도시 인재육성 및 연구개발 인력 채용 지원 - 고용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 외국인 채용지원
	HRD(직원 교육) 지원	1.3	- 기업 인재 개발 육성과 관련한 교육 및 지원
운영관리 및 기타 (5.4)	입지 지원	1.1	- 사업장 설립 시 분양 특혜 지원 - 사옥 취득세 경감
	사업단계별 차별 지원	0.7	- 벤처 장기유지 지원 - 초기 이후 지속적인 지원
	컨설팅 지원	0.4	
	M&A 지원	0.4	
	설비 지원	0.2	
	기타	2.6	- 벤처기업확인 행정소요 간소화 및 수수료 인하 - 주기적인 지원 혜택 안내
전체		100.0	

벤처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는 지원제도는 ‘세제’(96.8%)이며, ‘금융’(91.6%)과 ‘연구개발’(88.9%) 순으로 높은 수요가 있었다.

하지만, 벤처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높은 수요에 비해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저조했다.

실제 활용하고 있는 지원제도의 비율은 ‘세제’(65.0%), 연구개발(57.4%), 금융(51.1%) 순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벤처기업의 ‘수요’와 ‘활용’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 우대 지원제도 각각의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만한 지원제도의 부족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및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대상 범위를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확인 받은 기업은 15% 미만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상당한 좁은 상황이다. 또한, 창업 초기에는 순이익을 내기 어렵고 그 규모도 작아 세제 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고 실질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벤처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을 최초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3년 말 기준으로 벤처기업의 16.3%가 업력 7년~10년 구간에 몰려 있어, 제도 활용의 사각지대가 작지 않다.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업력 5년~10년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감면기간을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면, 5년~10년 구간의 벤처기업들도 세제 지원 범위에 들어와 스케일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및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산업자본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렸지만, 현재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규제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투자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 촉진과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VC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 40% 제한과,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CVC의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불가능한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해야 한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수익률은 각각 13.9%, 10.1%, 9.2% 수준이고, 고용보험기금은 무려 17.2% 수익률을 실현한 바 있다.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가 허용되면, 현재 11조원 수준의 벤처투자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고, 이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와 벤처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 벤처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R&D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벤처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비중이 높은 AI·빅데이터·클라우드·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폭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벤처기업법 상에 벤처기업을 위한 특화된 R&D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벤처기업 특화 R&D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고속 성장기의 유망 벤처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조건부주식제도 개선을 통해 벤처기업의 인재확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도 활용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스톡옵션 대비 활용도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이는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스톡옵션과 달리 비과세 혜택 등 세제 지원이 없는 것이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따라서 성과조건부주식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재유치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행사이익 비과세 및 과세이연 등 스톡옵션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IV

벤처기업확인제도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벤처기업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여 벤처정책 수립·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 설계

- 본 조사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조사 대상	2023년 12월 기준 벤처확인기업 30,799 개사 (개인사업자, 예비벤처기업 및 휴폐업, 청·해산 등 제외)
모집단	2023년 12월 기준 벤처확인기업 40,081 개사
조사 수	제조업 600 개 업체, 서비스업 400 개 업체
조사 기간	2024년 하반기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전화조사, Fax, 이메일 등 방식 병행)
조사 지역	전국 17 개 시·도

3. 조사 문항

- 기업체 개요 11문항,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식 3문항, 벤처기업지원제도 필요성 및 활용성 2문항으로 구성

조사 항목	내용
기업 개요	- 기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작성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부서, 직위, 수출 여부, 투자유치 여부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식	- 벤처기업확인 사유, 벤처기업확인의 효과성,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인지도
벤처기업 지원제도 활용 현황 및 필요성	- 벤처기업 지원제도별 필요 여부/활용 여부/향후 활용계획 여부 - 기존 외 필요한 벤처기업 지원제도

4. 응답기업 특성

- 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제조업이 60.0%, 서비스업이 40.0%로 구성되어 있으며, 4대 업종으로 분류된 응답 기업 비율은 ‘일반제조’ 32.1%, ‘첨단제조’ 27.9%, ‘첨단서비스’ 22.4%, ‘일반서비스’ 17.6% 순임
-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매출 규모는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매출 규모 구간별로 30%대의 비슷한 비중으로 구성됨

(단위 : 개, %)

구분		기업 수	비율(%)
제조 여부	제조	600	60.0
	서비스	400	40.0
4대 업종	첨단제조	279	27.9
	일반제조	321	32.1
	첨단서비스	224	22.4
	일반서비스	176	17.6
매출 규모 (제조업)	20억 미만	192	32.0
	20억~80억	189	31.5
	80억 이상	219	36.5
매출 규모 (서비스업)	10억 미만	136	34.0
	10억~50억	127	31.8
	50억 이상	137	34.3
합계		1,000	100.0

분류	지원제도
세제	○ 창업벤처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 벤처기업 합병 시 법인세 공제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법인세 공제
	○ 연구전담요원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 시 소득공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창업벤처기업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 이공계 인력 채용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 벤처기업 임직원 우리사주조합 출자 과세특례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 과학기술기금 벤처기업 투자 허용
	○ 국민연금 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출자 허용
	○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 대학교육기관 적립금을 소속 교원·학생 창업벤처 투자 허용
	○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등 투자 특례
	○ 기술보증기금 우선 신용보증
	○ 국방벤처협약기업 방산육성자금 융자 우대
창업	○ 벤처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 벤처기업 현물출자 대상 확대
	○ 벤처기업 현물출자 감정평가자 확대
	○ 벤처기업 합병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
	○ 벤처기업 소규모·간이합병 특례
	○ 벤처기업 영업 양도 절차 간소화
	○ 교육공무원 등 벤처기업 근무 (대표·임원) 휴직 허용
	○ 교육공무원 등 벤처기업 근무 (대표·임직원) 겸임·겸직 허용
입지	○ 벤처기업 창업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특례
	○ 벤처기업 도시형 공장설치 자격 특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 취득세·재산세 감면 및 부담금 면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벤처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세율 면제
	○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부여
특허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및 출원 우선 심사
	○ 벤처기업 임직원 산업재산권 전용실시권 부여
인력	○ 스톡옵션 대상 및 한도 확대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 기준 완화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력 기준 완화
	○ 벤처기업 창업자 임명일자 연기
	○ 병역지정업체 선정 상시근로자 수 기준 완화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 벤처기업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전문 인력 자격부여
	○ 벤처기업 인턴근무 학점 이수 인정(정보통신 관련학과)
	○ 과학기술유공자 벤처기업 기술지도 및 상담 지원
광고	○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벤처기업 확인제도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

작 성 자 • 정책연구팀 송민주

발 행 일 2025년 1월

발 행 처 (사)벤처기업협회

홈 페이지 www.venture.or.kr

문의 처 정책연구팀(02-6331-7063)

